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이승아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536호

시행일자 2025. 1. 21.

수 신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장, 대한내과학회장(대한심장학회장), 대한심혈관중재학회장, 대한결핵 및
호흡기학회장, 대한응급의학회장

참 조

제 목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-54(2025.1.20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관련 학회에 전달을 요청한 바,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향후 관련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사항도 확인 필요

#붙임 : 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-54(2025.1.20.) 공문 1부.

2. 에크모 급여기준 개정 안내.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